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통 열린강좌〉

지금 북한 주민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나 용 우 | 통일연구원
NA Yongwoo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구분야: 남북관계(교류협력), 동북아국제관계, 기후변화

주요 경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12기 정책위원
- (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실적

-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공저, 오름, 2018)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통일연구원, 2019)
-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전략과 실천전략(통일연구원, 2019)
- DMZ 평화와 가치(공저, 윤성사, 2020)
-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공저, 한울아카데미, 2021)
-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과제와 방향(통일연구원, 2022)
-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통일연구원, 2023)
- Voices of the Voiceless: Unveil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KINU, 2023)
-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통일연구원, 2023)

CONTENTS



01. 북한 인권의 실태

02.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

03. 북한 보건의료의 실태

04. 결론

01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에서도 ‘인권’ 개념이 있을까?

사회주의 헌법

제8조 “...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형사소송법

제6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6조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에도
인권이 있다?

북한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 ◆ 왜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 ◆ 북한에서 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혹은 특수성)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
 - 사회주의헌법 제63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북한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표명**
 - 인권을 국가의 권리, 혹은 자주권으로 연계 (외부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은 곧 내정간섭이라는 논리)



2024년 11월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20년 연속)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들까지 결코 듣지 않겠다**” 이라고 비난 - **외무성 대변인**

북한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	북한	한국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 아동권리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고문방지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강제실종방지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북한과 국제인권규범

- ✓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
- ✓ 북한은 1981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규약)'에 가입
- ✓ 이후 3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한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에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국제사회의 평가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 —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ARTICLE 14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ARTICLE 22 — 1.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3 —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4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5 —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6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7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8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9 —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30 —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1 —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ARTICLE 32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RTICLE 33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RTICLE 34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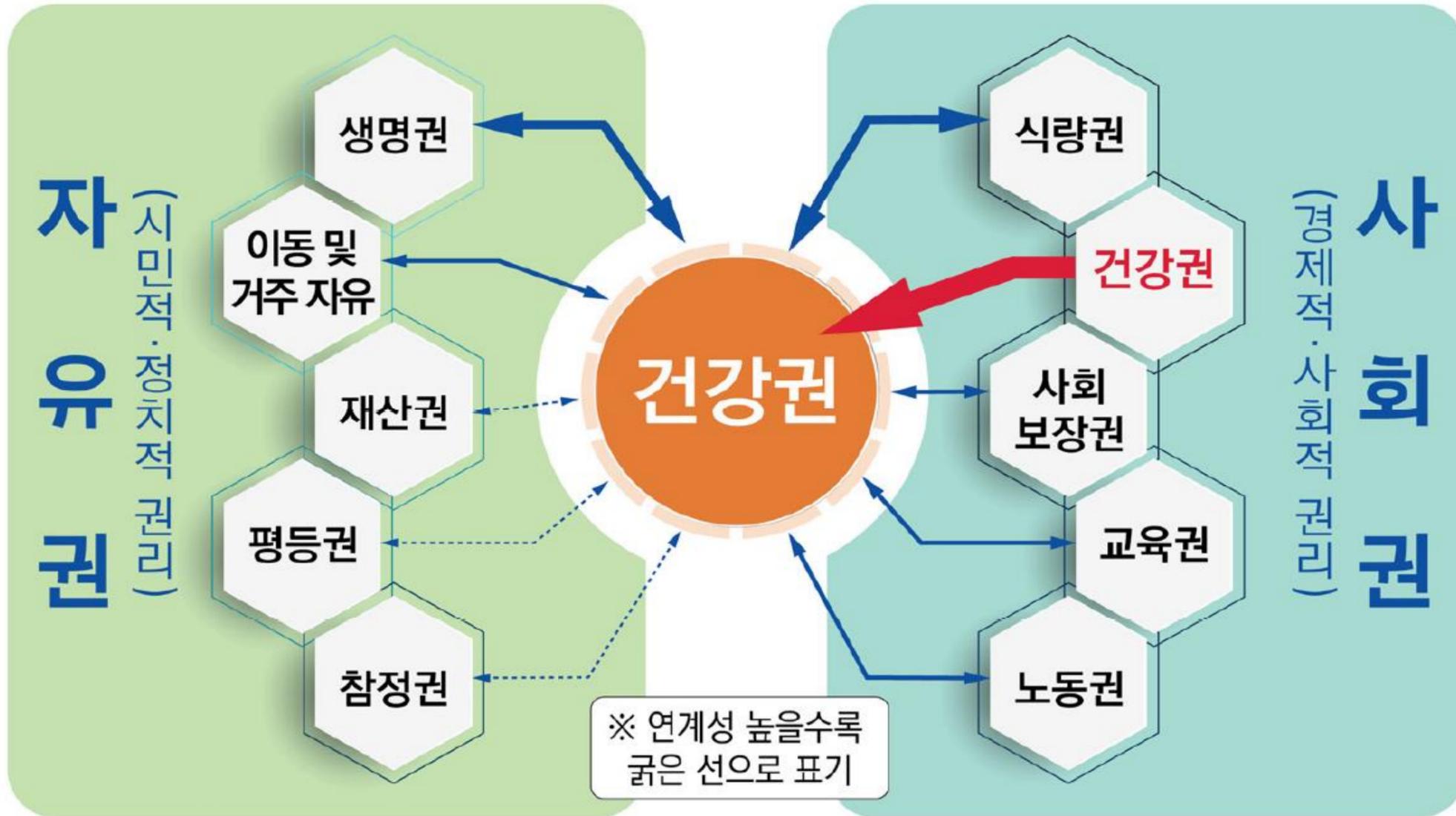
ARTICLE 35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RTICLE 36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

시민적·정치적 권리 (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정권•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환경권• 문화권

건강권의 연계적 성격



- 건강권은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 식량권, 주거권, 교육권, 생명권, 비차별권 등 다른 기본권들과 밀접하게 연계, 그러한 권리들을 사회에서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
- 특히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지대한 영향

국제인권규약에서의 건강권

<사회권 규약>

제12조: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1)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2)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3)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4)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을 명시

<북한 사회주의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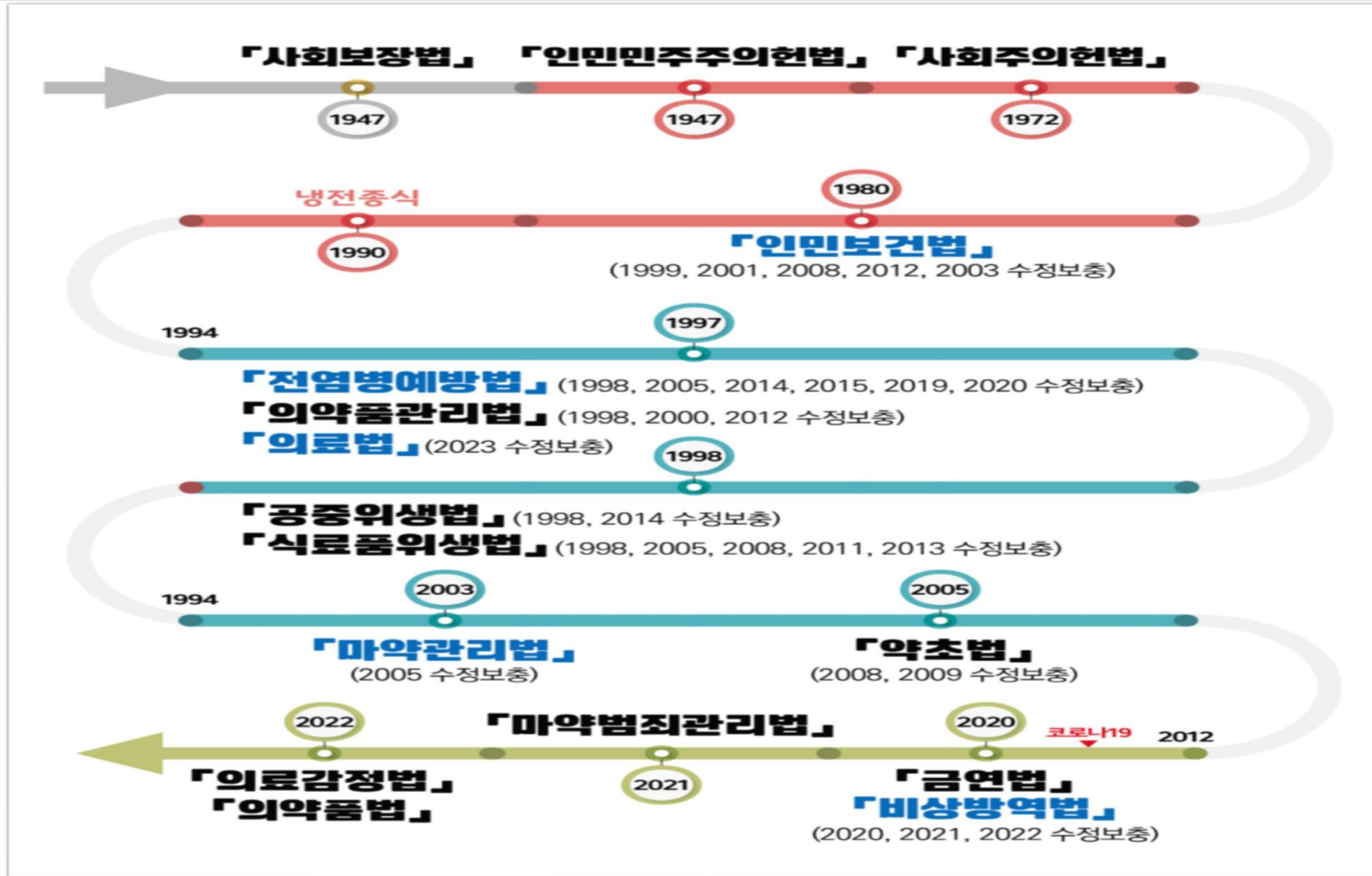
제3장 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인민보건법>

제1조: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사업”으로 규정

→ **건강권의 중요성 인정**

북한 보건의료 법제의 변화



02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

2.1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특징

➤ [특징]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에 북한 특유의 정책 가미

- 남한의 보건의료 시스템(NHI)이 국민 보건 서비스형 건강보험 제도인 반면, 북한은 국가의 보편적 의료공급에 중점을 둔 사회보험형 보건의료 시스템(NHS)에 기초
-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 이념인 '포괄적 양질의 보건의료', '수혜 대상의 보편성', '국가에 의한 단일의 통일된 서비스' 등의 보편적인 특성 존재

① 무상치료제도

- 무상치료제도의 전제는 국가가 모든 보건 시설과 의료 장비는 물론이고 의료 인력까지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심화 이후 공식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자 1998년에 의료법 새로 마련하여 정비를 시도하였으나 이마저 사실상 실패

2.1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특징

② 예방의학 제도

- 예방의학제도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연설(1966년) 후 북한의 기본원칙이 되었으며, 북한 헌법(1972년)과 인민보건법(1980년)을 통해 명문화
- 북한은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막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치료보다 병의 예방을 우선하여 촘촘한 방역과 위생교육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을 실시

③ 의사담당구역 제도(호담당의사 제도)

- 의사담당구역제도는 북한 주민들을 구역별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담당 의사를 배정하여, 할당된 의사가 그 구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의사들은 담당구역내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환자 치료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위생, 소독, 예방접종, 검진 등을 담당하며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기본 골격을 유지

2.2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 [보건의료 시설 현황] 북한의 의료시설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경제난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어려움이 가중

- 북한의 보건의료 기관체계는 총 4단계의 의료기관 체계로 구성
- △1차 의료기관은 남한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진료소(의사수 1~10명), △2차 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의 인민병원(의사수 약 50명), △3차 의료기관은 각 도에 1개씩 있는 의학대학병원 형태(의사수 약 200명), △4차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의사수 약 400명)

북한의 의료기관별 의사 수, 진료과목, 병상 규모 및 현황

의료기관	의사 수	진료 전문과	병상 규모
1차 의료기관	리동 진료소	없음(주로 준의사 근무)	0~2개
	종합 진료소	내과, 외과, 소아과(일부)	0~5개
	리 인민병원	10명 이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 구강과
2차 의료기관 (시·군·구역 인민병원)	약 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 린트겐과, 구강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신경과, 실험과(혈액검사실), 물리치료과, 결핵과, 감염과, 약제과, 구급과, 진료과(간부진료과)	100~500개
3차 의료기관 (도 인민병원)	약 200명	내과(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외과(복부, 수지, 정형, 흉부, 신경),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동요과), 린트겐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신경과, 물리치료과, 비뇨기과, 마취과, 기능회복과(회복치료과), 기능진단과, 병리진단과, 종양과(일부), 두경부외과(일부), 구급과, 소생과, 진료과(간부진료과)	800~1,200개
4차 의료기관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약 400명	3차 의료기관과 유사	1,000개 내외

자료: 통일의학센터 외(2013)를 재구성한 신희영(2017) 재인용

2.2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 소모품의 부족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국가 배급을 통한 공식적 의료물자 공급체계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북한 시장화의 확산으로 장마당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되어 계층간 의료 이용 격차 심화
 - 중국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북한 의약품 공장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능력 약화로 의약품 부족의 어려움이 가중
- **[보건의료 인력] 북한 보건의료 인력은 전문성보다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봉사성을 강조하는 특징**
 - 북한 인민보건법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을 ‘보건일군’이라 칭하고, 이들의 의무와 권리와 아울러 구체적인 자격과 역할을 명시
 - 2018년 기준 인구 1만명 당 북한의 의·약사수는 36.4명, 준의료활동 종사자수는 52.3명으로 남한의 의·약사수 48.1명,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49.6명 보다 낮은 수준

2.3 김정은 집권 이후 보건의료시스템 복원 추진

- **[정책적 강조] 의료기관의 현대화, 의료봉사의 질 향상,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체계의 복원 도모**
- **[법률 제정 및 개정] 기존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수정보충)하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채택)**
 - 전염병예방법 2020년에만 2차례 수정보충, 전염병예방법에서의 비상방역을 독립적인 법률인 비상방역법으로 분리해 2020년 제정하고 최근까지 4차례 수정보충 단행
 - 향후 대외교류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물자소독법 등을 채택, 외부로부터의 보건의료위협들에 대응
 - 그러나 현실은?

03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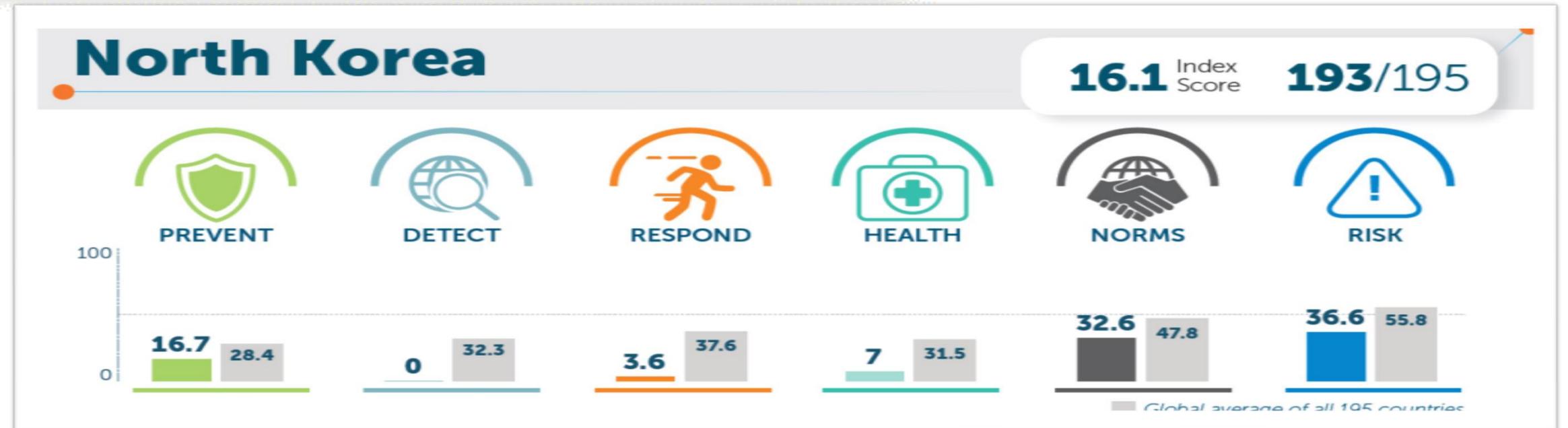
3.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

3.1 북한의 보건의료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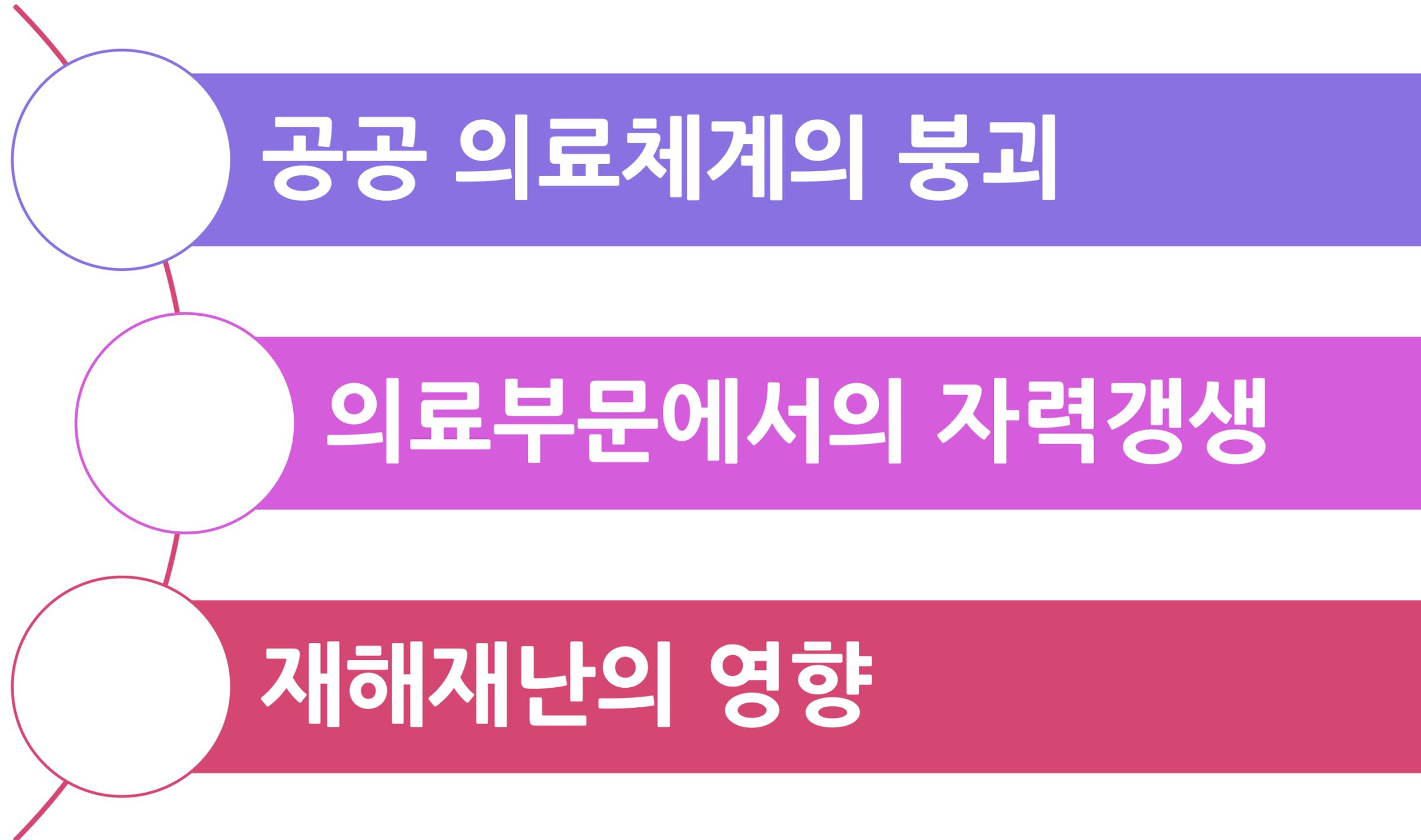
〈그림〉 북한의 글로벌보건안보지수(GHSI, 2019 / 2021)



2019



2021



3.2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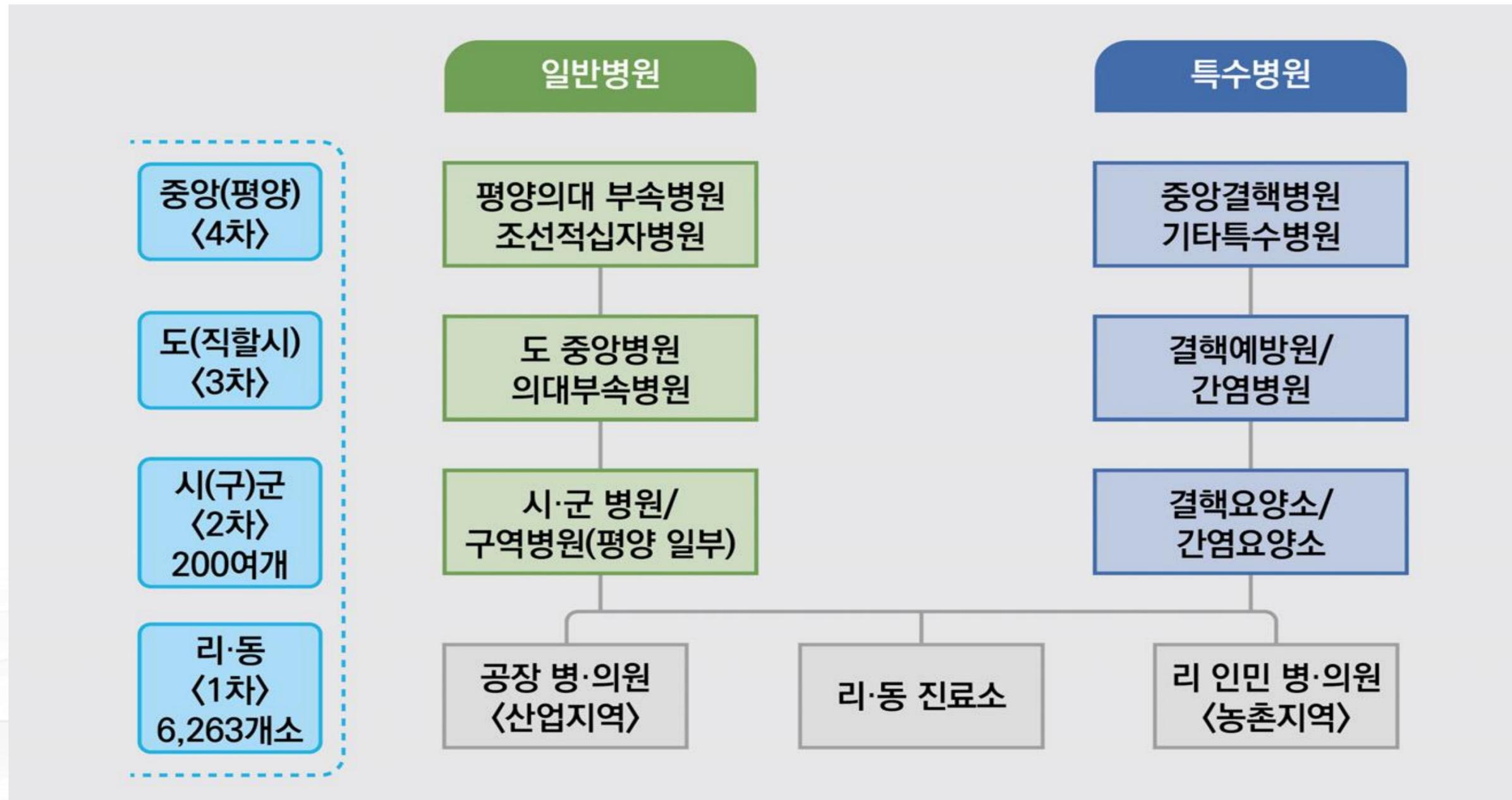


1. 공공 의료기관의 운영 및 접근성

-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시설 및 인프라 현대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장 건설 등에 나서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
- ✓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평양 및 도/직할시급에 일부 존재하지만, 시/군 병원들은 충분한 의료기구들도 갖추지 못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3.2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

북한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3.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

3.2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

동마다 진료소가 있었지만, 실력이
안 좋고 의료 수준이 낮았다
-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함경남도 덕성군 수서리 진료소



천리마제공연합기업소 종합진료소

3.2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

2. 공공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정치사회적 격차 심화

- **경제력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확대**

- ✓ 이는 북한 보건제도의 핵심인 무상치료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 ✓ 초보적인 의약품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수술 등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환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 ✓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대가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보다 예절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대가(뇌물)은 일정 수준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

- ✓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

3.2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

2. 공공 의료

▪ 정치적시

✓ 일반 주민

양호하게

✓ 실제 군병

✓ 간부 전용

증언(201



용하는 진료과는

존재

고 뽑는다고

3.3 의료부문에서의 '자력갱생'

1. 사적 의료행위의 일상화

- ✓ 북한의 지속된 경제난(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으로 인해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보다는 개인 의사나 개인 약국을 이용)
- ✓ 주민들이 개인 의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개인 의사들이 실력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
- ✓ 북한 의료인력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또한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뇌물의 일상화)

3.3 의료부문에서의 '자력갱생'

2. 주민들의 자력구제 경향

- ✓ 무상치료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국가)에서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 의약품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약국(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적 구매가 일상화
- ✓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소득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계
- ✓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위생선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질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획득하기보다는 민간용법이나 약품 판매상에게 의존하는 경향
- ✓ 그러나 사적 의료서비스 등 불법적 의료행위는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3 의료부문에서의 '자력갱생'

3. 마약류의 오남용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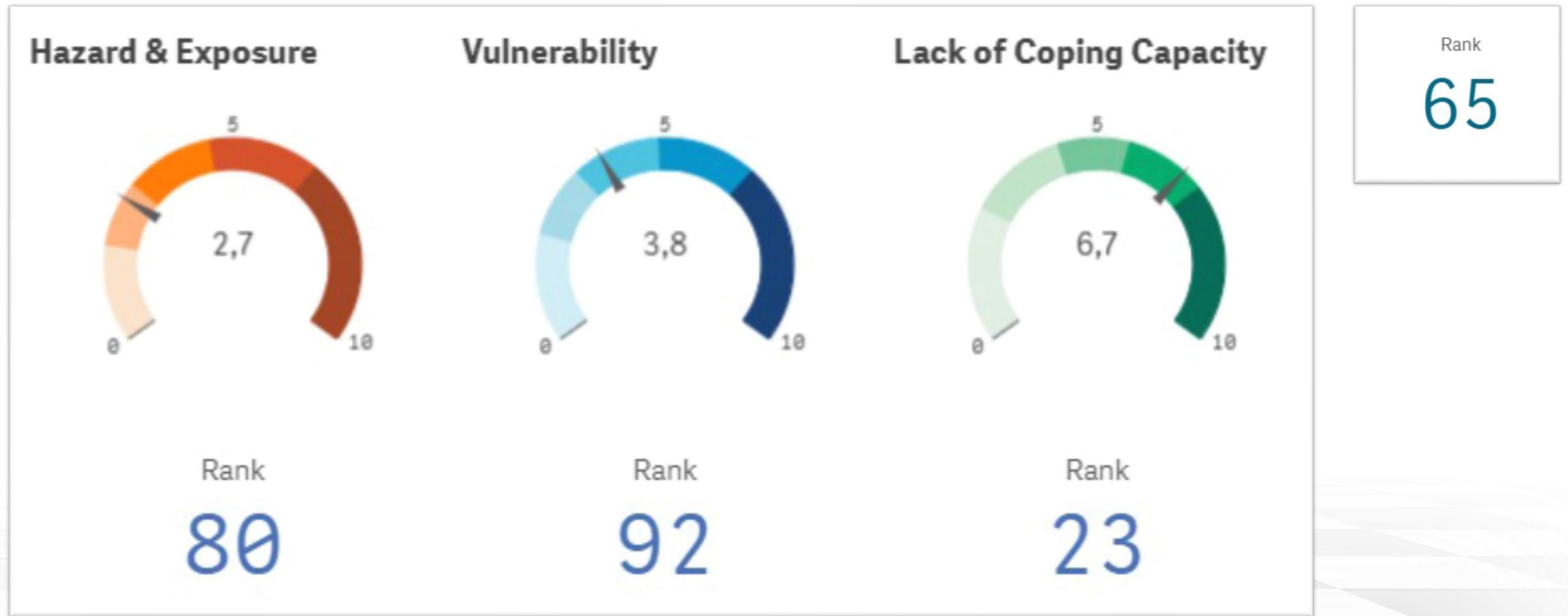
- ✓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병두, 아편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
- ✓ 북한 당국은 의약품관리법과 마약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마약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병두나 아편이 질병 치료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실제 일상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 ✓ 일부 개인 의사들까지 주민들에게 마약류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는 상황
- ✓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은 최근 북한이 채택한 법규를 통해서 확인됨

3.3 의료부문에서의 '자력갱생'

2015. 7. 22. 형법	2022. 5. 17. 형법
제130조(마약·독약·폭발물의 보관·공급질서 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1조(마약분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2조(마약비법공급죄) 대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6조(마약비법보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06조(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33조(아편꽃 비법재배죄) 많은 양의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4조(아편비법채취죄) 극히 많은 양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5조(마약비법제조죄)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38조(마약비법사용죄)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37조(마약밀수, 거래죄)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3.4 재해재난의 영향

2024년 북한의 INFORM Risk Index



3.4 재해재난의 영향: 코로나19

❖ 코로나19가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에 미친 영향

- ✓ 2020년 8월 22일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및 비상방역법 채택으로 주민들의 이동제한 및 격리 조치 실시 =>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건강권, 식량권, 취약계층 인권 등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

제정 비상방역법(2020.8.22.)		개정 비상방역법(2021.10.19.)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5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9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68조)	극히 엄중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72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제73조)	

3.4 재해재난의 영향: 코로나19

❖ 코로나1

✓ 코로나

대증치

✓ 민간요

유열자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적범위에서 열병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파화되고있는 지금 유열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있는 유열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 몇가지를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섭생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안정을 보장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화되기 쉽고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여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키고 소금물로 자주 함수를 하여야 하며 산유나 요구르트를 비롯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환자들인 경우 증상에 따라 철저히 의사의 처방하에 약물선택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우선 항비루스치료이다. 재조합사람인터페론 α-2b 주사약(300만단위)을 한번에

150만단위씩 2일씩 3~5회 근육주사한다. 또한 항생제치료이나 점액농성가래균감염증상들이 있으면 항생제치료를 않는다.

점액성가래가 나 혈구수의 증가와 균감염소견이 나타나면 200만단위(어린이의 경우 몸무게 1kg당 50만단위)를 하루 3회 근육주사하거나 또는 에리트로미신 0.5g씩 1일 3회 먹는다.

세균감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 페니실린 300만~500만단위(어린이의 경우 몸무게 1kg당 20만~25만단위)를 하루 3회에 나누어 주사하거나 세프트리악손을 한번에 2g씩 1일 2회 또는 테보플록사신을 한번에 0.5g씩 1일 2회 정맥주사한다.

경환자치료에서 주의할것은 약물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하에 써야 하며 서로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짧은 시간내에 반복하여 많이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코물흘리기나 재채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메드롤을 한번에 40mg씩 하루 1~2회 또는 클로르페닐아민을 한번

안궁우황환을 한번에 1~2일씩 더운물에 타서 3~5일간 먹거나 삼향우황청심환을 한번에 한알씩 하루에 2~3번 더운물에 타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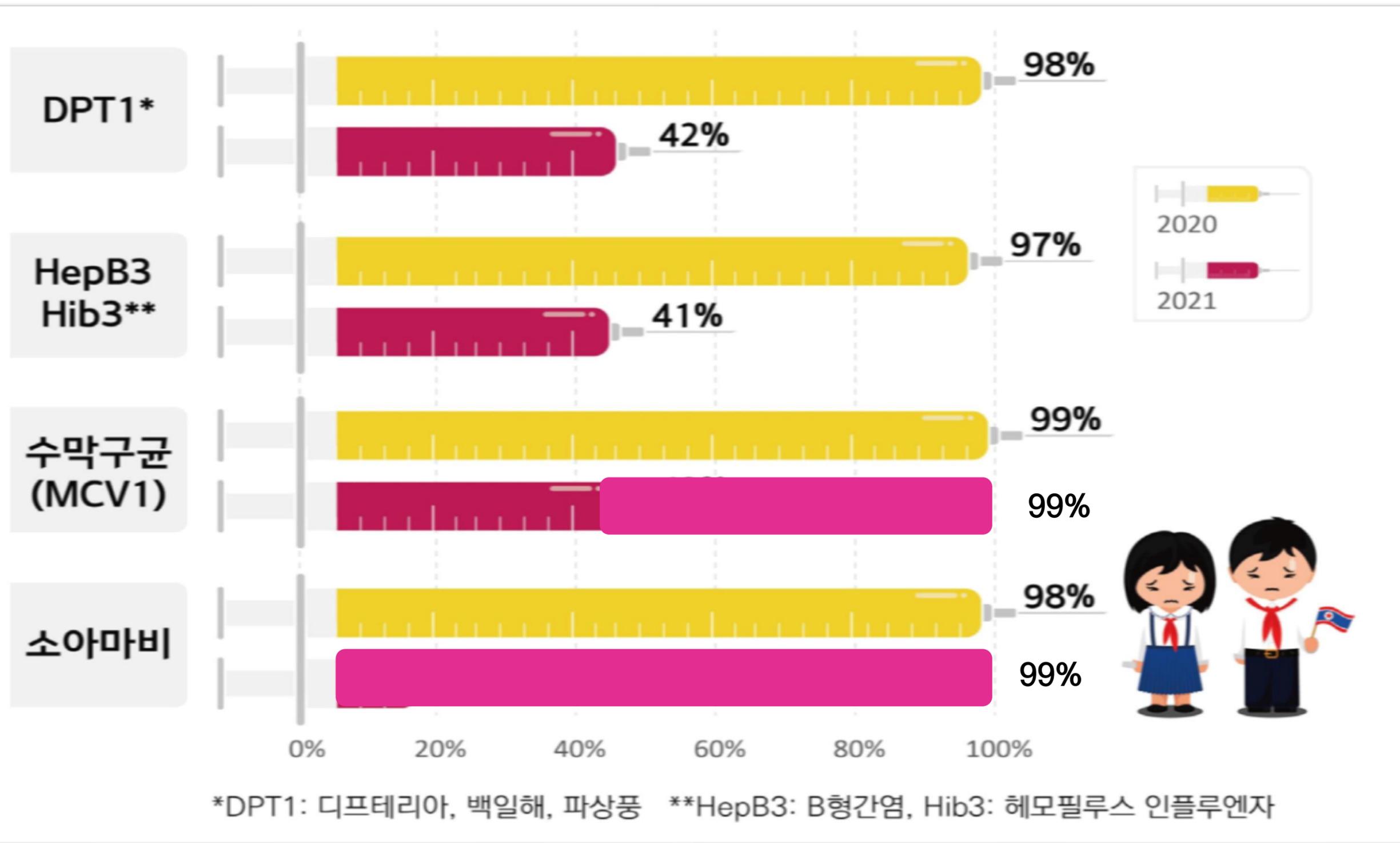
민간요법으로는 금은화를 한번에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한번에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 먹는다.

또한 금은화를 한번에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한번에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 먹는다.

중환자들은 의료인군들의 지시하에 산소로법, 순환부전에 대한 대책, 스테로이드제치료 등 전문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사기자

3.4 재해재난의 영향



	2022	2023
DPT1*	41%	41%
HepB3 Hib3**	0%	16%
수막구균 (MCV1)	67%	28%
소아마비	99%	0%

공공 의료체계 붕괴

- 의료시스템 접근성 열악
- 의료장비 낙후
- 의료기관 내 차별



사적의료행위 일상화

- 공공 의료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
- 자력갱생



마약류 오남용

- 잘못된 의료지식 확산
- 병두·아편에의 용이한 접근



코로나19 영향

- 국경봉쇄로 인한 의료물품 부족 심화
- 북한 당국의 외부사회 지원 거부



04

결론

4.1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2017년 7월 6일 베를린, 문재인대통령 “감염병 공동대응협력 제안”
-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제2조 4항에서도 ‘남북 방역협력 합의’
- 그동안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및 방역협력에 대한 선언 및 합의들이 수 차례 진행(ex. 2018.11 보건의료분과회담)
-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주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 그러나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좌우
- 2001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진행, 2008년까지 13차례 방북과 다양한 물품 지원 및 공동행사 진행한 경험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 (국회 시정연설)
- 2022년 8.15 경축사, “담대한 구상” 제안 (초기조치 중 보건의료 포함)
- 2024년 “8.15 통일 독트린” 제시(7대 추진방안 中 3.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구)

4.2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

-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 2) 북한의 적극적 협력(호응)
- 3) 방역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통합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에까지 위협하며, 결국 양측 사회, 경제 등 공동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
- 북한은 코로나19 사례에서 보였듯, 자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처럼 국한된 긴급의료 협력을 제안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보건의료협력**을 제안할 필요
- 남북은 과거 말라리아, 구제역,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 사례가 있음
- 북한의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확인(2019.1 김정은 4차 방중 당시 동인당 방문, 2022.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대회 김정은의 시정연설)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 2018년 남북 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정보교환 등 협력 제도화 기반
- 보건의료부문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현 제재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정상간 합의했기 때문에 이행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 사안별 면제가 아닌 “포괄적 면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북한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 북한은 ‘고려의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학(한의학 포함)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표〉 UN 1718 위원회의 제재 면제 조치 현황

〈2022.9.21. 기준 면제승인 개시일 순〉

면제 신청 국가/단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품	승인 개시일	승인 종료일	연장 종료일
이탈리아	AGROTEC SPA(이탈리아 회사)의 농업 기계 및 장비	2019.7.25	2020.6.2	2023.8.15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결핵, 간염환자 및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자재 및 장비(코로나19 영향으로 연장)	2019.8.7	2020.7.1	2022.12.14
프랑스	민간단체(PUI)가 황해남도에서 아동영양 및 가정회복력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2019.8.9	2020.8.7	종료
Ignis Community	평양의 발달장애 아동 회복 중심, 평양척추회복중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	2019.9.4	2020.8.24	종료
국경없는의사회	함경북도 주민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물품, 함북 경성 주민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	2019.9.23	2020.9.26	종료
세계보건기구(WHO)	다제내성결핵을 위한 진단 장비, 혈액백 제조공장 설치, 응급의료장비, 중환자 치료 장비, 백신예방 가능 질병을 위한 실험시설 도입을 포함해 WHO의 인도적 활동에 해당하는 물품	2019.9.23	2023.7.17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내 WHO 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인도적 업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WHO 사무소의 이동수단 3대	2019.9.26	2023.7.17	
유엔인구기금	유엔인구기금의 국가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운반 수단 2개 및 여분의 장비	2019.10.18	2020.10.7	종료
유니세프	북한 주민의 건강, 영양, 식수, 위생 등 북한 내 유니세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물품	2019.4.11	2020.6.4	종료
유니세프	북한 주민의 건강, 영양, 식수, 위생 등 북한 내 유니세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물품	2019.12.9	2020.6.9	2023.3.22
Love North Korea Mission	라선지역의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	2019.4.4	2020.6.17	종료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면제 신청 국가/단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품	승인 개시일	승인 종료일	연장 종료일
스위스	태양열펌프에 의한 식수공급시스템 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2020.1.7	2020.7.7	종료
국경없는의사회	함경북도 주민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물품 및 함북 주민들의 긴급의료지원 물품	2020.1.7	2020.7.7	종료
세계식량계획 (WFP)	WFP의 북한 잠정 국가전략계획(2019-2021) 하에서 주민의 영양부족 및 식량불안을 해소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2020.1.20	2020.7.20	2023.7.26
세계보건기구 (WHO)	원격의료서비스 및 주요 인명구조 등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	2020.1.29	2020.7.28	2023.7.17
유진벨재단 (EBF)	유진벨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 진단 및 치료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2020.1.30	2020.7.30	종료
SAM Care International	평양 제3병원에서의 사용을 위한 의료장비, 의약품 및 식량	2020.2.7	2020.8.7	2022.8.10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함 물품	2020.2.20	2020.8.20	종료
국제적십자사연맹	코로나19 발생의 위험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긴급 보건 대응을 위해 필요한 물자	2020.2.21	2020.8.21	종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방지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진단장비 및 물품 전달	2020.2.27	2020.8.27	2023.7.17
스위스	스위스 인도주의지원청의 코로나19 북한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살균 키트 및 개인 보호 물품	2020.3.11	2020.9.11	2022.11.2
아일랜드	식량 및 영양안보 증진,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비정부기구인 Concern Worldwide가 북한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 개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	2020.4.1	2020.10.1	종료
대한민국	비정부기구인 국제푸른나무의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회복을 위한 농업 재활 사업」에 관계되는 물품	2020.4.30	2020.10.30	종료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면제 신청 국가/단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품	승인 개시일	승인 종료일	연장 종료일
핀란드	비정부기구 Finn Church Aid(FCA)의 황해북도 지역 초등생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재해 위험감소 및 비상사태에 대한 교육을 위한 물품	2020.6.24	2022.12.14	
유니세프	지역사회 및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등 북한 내 유니세프 프로그램(건강, 영양, 식수 및 위생 분야)을 위한 필수 물품	2020.6.2	2023.8.11	
유니세프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북한 내 유니세프의 활동에 필요한 의료장비(코로나19 영향으로 연장)	2020.7.24	2023.8.11	
대한민국	유리온실시스템과 관련 재료를 제공해 남포와 평안남도에서 취약그룹들에 대한 영양 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물품	2020.8.4	2023.1.25	
대한민국	비정부조직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북한 내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장비지원을 위한 물품	2020.8.13	2023.2.22	
대한민국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2021.1.22	2022.10.18	
싱가포르 적십자사	RT-PCR 장비, 진단키트 등 북한 적십자사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활동을 위한 물품	2021.5.6	2022.9.4	
대한민국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의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심각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물품	2021.10.28	2022.10.28	
대한민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장비의 제공 및 방역 사육장의 건설을 위한 물품	2021.11.3	2022.11.3	
유니세프	코로나19 대응, 말라리아 일상면역과 예방을 위한 유니세프 프로그램에 필수 물품	2021.11.30	2022.11.30	
대한민국	비정부기구인 남북경제협력연구센터(IKECRC)에 의한 평안북도에서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위한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된 물품	2022.1.26	2023.1.26	

4. 결론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면제 신청 국가/단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품	승인 개시일	승인 종료일	연장 종료일
유니세프	유니세프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워크인콜드룸(WICR)의 콜드체인 장비	2022.3.9	2023.3.9	
한국	비정부기구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CBNK)의 북한 강원도 고성군 취약계층의 수인성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연탄탄(CBNK)의 연탄 기계	2022.4.5	2023.4.5	
FAO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농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FAO의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	2022.5.6	2023.5.6	
Ignis Community	평양 척추재활센터(PYSRC)에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장비	2022.8.12	2022.5.12	
유진벨재단 (EBF)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 약제내성결핵에 대한 EBF의 지속적인 북한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품	2022.9.2	2023.9.2	

자료: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pp. 97-98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수정 보완.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 (검색일: 2022.9.21).

4.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보건의료협력

단기

북한의 필요(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차 확대

- 감염병 정보 공유
- 병원 건설 장비(건축, 의료)
- 국제기구(INGO)와의 협력
- 고려의학/한의학(학) 간 협력 (남북 전통의학 용어사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약재 공동재배단지)
- 전문의료인력 양성

중장기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

- 남북 보건의료 공동위원회
- 남북 질병연구센터 설치
-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 협력

감사합니다
Thank You

